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0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범운전자 선발 요건 확대,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근거 등 마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71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0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개요	1
--------------	---

【박용갑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호선의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 검토의견	5
-----------------	---

1. 모범운전자 선발 요건에 10년 이상 무사고인 일반운전자 추가 (임호선의의원안 제2조)	5
2.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예산지원 및 감독(박용갑의원안 제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9
3.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모범운전자에 보상 및 치료(박용갑의원안 제5조의3 제2항·제3항·제4항)	14
4.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박용갑·임호선의의원안 제5조의3)	19

I. 개요

【박용갑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7.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거리질서 유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과 장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등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가 부재함.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

업 내용이나 감독 등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조의3제2항·제3항·제6항 신설 등).

【임호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7. 21.

다. 회부연월일 : 2025. 7.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

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모범운전자 선발 요건에 10년 이상 무사고인 일반운전자 추가 (임호선의원안 제2조)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에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3호).

현행	임호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2. (생략)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34. (생략)	제2조(정의) ----- -----. 1. ~ 32. (현행과 같음) 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 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 다.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 34. (현행과 같음)

경찰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2013년 26,054명이었고, 2020년에는 25,570명으로 그 수가 비교적 유지되었으나, 2024년에는 21,750명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약 17% 감소함.¹⁾

[모범운전자 현황]

연도	2013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모범운전자(명)	26,054	...	25,334	25,570	25,864	25,570	23,276	21,750

(자료: 경찰청)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택시운전자가 자원봉사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어려워진 운수업계 현실에서 영업시간을 할애하여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²⁾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 중 종사하는 사람 외에도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이 모범운전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모범운전자가 원활하게 충원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들이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지원하는데 드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이 혼잡한 도로 등에서 수신호³⁾ 등을

1)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정보공개자료실>사전정보공표목록>생활정보
 2) MBN뉴스 2025년 7월 3일 기사, “‘예우도 예산 지원도 없어’…갈수록 줄어드는 모범운전자”
 오마이뉴스 2024년 12월 19일 기사, “도로 교통 정리해주던 ‘모범운전자’가 사라져 간다”
 3)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통해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운전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 제2조제33호다목과 같이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경우에 더하여 실제로 운전을 한 시간이 일정 시간이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데,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교통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화된 교통 환경에서 모범운전자 인원 규모를 유지하는 노력 외에 모범운전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모범운전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개정안의 표현에 따르면 실제 도로 운전 경험이 없는 소위 ‘장롱면허자’가 모범운전자로 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범운전자 선발 시 추가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이를 위해 새로운 모범운전자 선발 요건을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운전경력 확인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예산 지원 및 감독(박용갑의원안 제5조의2제2항·제3항·제4항)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의 종류로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등을 명시하고, 국가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수입 등의 예산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박용갑의원안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u><신 설></u>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u>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u> 2. <u>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u> 3. <u>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u> 4. <u>모범운전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u>

현행	박용갑의원안
<u><신설></u> <u><신설></u>	5. 모범운전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 6.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등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명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구) 내무부령에 따라 1971년 12월 27일 창립되었고, 1998년 9월 5일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 법인설립이 허가됨.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6조에서 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4) 모범운전자연합회 홈페이지 > 모범운전자연합회 > 연혁

것임.

개정안 제5조의2제1항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6조를 비교해 보면, 현행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6조가목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으로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으로 규정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질서유지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 연합회 사업 비교>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6조(사업)
1.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자. 무선호출 서비스로 고객에 봉사. 뺑소니 사고, 안전사고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아.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모범운전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	
5. 모범운전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	
6.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행사 바. 불우운전자 가족 장학금 지급 행사 사. 경로잔치 및 노인 효도관광 행사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등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⁵⁾이므로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해당하고, 질서 유지 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7호⁶⁾에 따라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질서 유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할지라도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봉사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사적자치 원칙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통해 국가가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예산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만,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⁷⁾ 성격상 민간⁸⁾ 봉사활동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⁹⁾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예산 지원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다른 자원봉사활동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1항은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한 2021년 기준 약 15억원의 예산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되었고 별도의 국가 예산지원 없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음.

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3조는 본 연합회는 경찰청 산하에 두며, 각 시·도경찰청 산하에 지부를 두며 각 경찰서 산하에 지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경찰청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음.

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제1조(명칭) 본 회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라 칭하고, 지부(시·도 단위)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명)지부라 칭한다.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모범운전자에 보상 및 치료

(박용갑의원안 제5조의3제2항·제3항·제4항)

박용갑의원안은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등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박용갑의원안 제5조의3제2항·제3항·제4항)

현행	박용갑의원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

현행	박용갑의원안
② 국가는 <u>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u>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생략)	<u>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 ----- -----. ⑤ · ⑥ (생략)

개정안은 국가가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모범운전자는 혼잡한 도로에서 수신호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운데 서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2항은 국가가 부상을 입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에서 관련 서류를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2억원, 상해 입원 일당(180일 한도) 7만원, 통원 일당(30일 한도) 5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음.

[자원봉사 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금 액
1	상해사망·사회재난사망·상해후유장해·의사상자 상해위험	각 2억 원
2	상해 입원 일당(180일 한도) / 통원 일당(30일 한도)	7만 원 / 5만 원
3	자원봉사 배상책임 / 주최자 배상(영업배상)	2억 원 / 5억 원
4	구내 치료비(자연재해 포함)	1억 원
5	골절·화상 진단 / 수술	각 200만 원
6	얼굴 성형 비용 / 특정 전염병 보상금	500만 원/100만 원
7	성폭력 범죄 보상금 / 상해 보상금	1,000만 원/500만 원
8	자연재해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각 5억 원
9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상	500만 원
10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50만 원
11	정신적 피해 법률비용	1,000만 원
12	한랭·온열 질환 진단금 / 입원 일당(5일 한도)	50만 원/5만 원

(자료: 경찰청)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부상을 입은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 보상 및 치료를 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부상을 입은 모범운전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치료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는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및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참고로, 경찰청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한 2021년 기준 약 15억원의 예산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환되었고 별도의 국가 예산지원 없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1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실시 규정을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4.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박용갑·임호선의원안 제5조의3)

박용갑의원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6항). 임호선의원안은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4항).

현행	박용갑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④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현행	박용갑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 (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모범운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국·공유재산인 건물,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거나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보다 보다 용이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우에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

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 법률의 [별표]가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9)의 심사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형식상 현물 지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부담해야 할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및 타 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